

■ 법률 칼럼

## 2021년 드림러법안

불체자 구제안이 포함된 2021년 시민권법안(Citizenship Act of 2021)에 관심이 집중되는 바람에 2월4일에 상정된 2021년 드림러법안(The Dream Act of 2021)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공화 양당이 합의하여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상정했던 드림러법안과 동일한 것입니다. 국경장벽 설치, 이민 축소 등과 연계되어 논의되었던 관계로 양당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입니다.

그 법안을 2월4일 민주당의 더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그램함 상원의원의 공동 발의로 다시 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좀더 포괄적인 불체자 구제안을 다루고 있는 시민권법안에 밀려서 덜 관심을 받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당이 합의한 법안이고 드림러 청소년들의 영주권 부여까지 포함된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기존 날(최초 입국일/서류미비가 된 날짜)를 맞추지 못해 DACA를 신청하지 못했던 많은 드림러들도 임시 신분을 획득한 후에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입니다.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인 2021년 시민권법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드림러 법안같이 합의가 된 법안을 먼저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그 법안 내용을 크게 2 부분으로 살펴봅시다.

- 첫째, 임시 영주권 취득 조건입니다.
1. 드림러로서 임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18세 미만 즉 17세 또는 더 어린 나이에 미국에 입국했어야 합니다.
  2. 신청인은 법안이 통과된 날짜를 기준으로 미국에 최소 4년 이상 지속적으로 계속해서(Continuously) 거주했어야 합니다.
  3. 지문 검사를 통해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신원조회를 통해 중범죄(1년 이상 감옥에 갈 수 있는 범죄) 또는 경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좋은 도덕적 품성

(Good Moral Character)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4.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최소한 고졸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검정고시(GED) 준비자도 고등학교 재학과 동일하게 취급).

둘째, 임시 영주권이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되는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면 바로 영구 영주권자가 됩니다.

1. 미국 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어야 합니다.
2. 다음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 1) 2년제 대학교를 졸업해 전문대 학위를 취득했거나,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4년제 대학교에서 현재 2년 이상 공부를 마친 경우 또는 이보다 더 높은 학위를 받은 경우 (Education Track).
  - 2) 군대에서 2년 이상 복무한 경우 (Military Track).
  - 3) 총 합계로 3년 이상 취업한 경우 (Work Track).
3. 영어/역사 공민 시험 통과.
4. 위와 동일한 신원조회 통과(좋은 도덕적 품성).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법안에 DACA의 "2012년 6월15일 이전" 처럼 신분을 잃은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어 입법이 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법이 통과된 후에 신분을 잃은 경우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안 통과 전에 조울 과정에서 보완될 부분이므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 임플란트 식립·사랑니 치료

### 노련한 전문의에 맡겨야 부작용 안심

김 00 씨는 오래전 사고로 인해 상실된 치아를 임플란트로 치료하기 위해서 치과에 내원하였다.

사고 당시 치료를 바로 시행해도 되었지만 임플란트는 치료 기간이 길고 치료 시 잇몸 절개로 부어오름이나 통증, 출혈이 많을 것이 걱정되어 차일피일 미루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대학생 딸의 사랑니 발치로 치과를 찾았다가 임플란트 치료 기간도 짧고 출혈이나 붓기가 거의 없는 네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알게 되어 치료를 결심하게 되었다.

일단 남녀노소 불문하고 치과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치료가 시작되면 많은 비용이 들고, 통증이 찾아오기 때문인데 충치 치료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나 사랑니 발치 치료 등은 더욱 두려움이 커진다.

임플란트는 상실되거나 손실된 치아를 자연치아와 비슷한 인공치아인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대체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이다. 요즘은 임플란트가 대중화 되었다고 해 아무 곳에서나 치료를 쉽게 결정해서는 안된다. 환자의 구강 상태(잇몸뼈 상태나 신경)나 치주질환 등으로 인한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치료 시 부작용을 고려하여 시술해야 하는 고난이도 수술이기 때문이다.

사랑니는 좌우 위 아래턱 총 4개가 날 수 있지만 사랑니의 개수는 사람마다 다 다르며, 사랑니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혹은 잇몸 안에 매복되어 있기도 한다. 치아가 균열하게 나와야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치주질환의 문제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사랑니의 경우에는 치열의



맨 안쪽 끝에 자리 잡으면서 치솔이 닿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청결을 유지하기 어렵다.

임플란트 식립이나 매복되어 있는 사랑니 발치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과에 방문한다면 무엇보다도 의료진의 풍부한 경력과 노하우를 꼼꼼히 따지고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난이도가 높은 임플란트 식립이나 사랑니 발치에 있어서 의료진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실력을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 임플란트 식립 시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치과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사랑니의 경우에는 발치 과정에서 신경이나 혈관이 손상될 경우 부작용으로 감각 이상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치과를 선택할 때에는 첨단 진단 장비로 치아 구조를 정밀 검진하고 맞춤형 진단과 진료를 시행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Micheal Han D.D.S  
Star 28 Dental Clinic  
TEL (714) 523-2828  
goteamhcd@gmail.com



#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PWC 근무

PREMIER  
TAX  
GROUP

(714)530-0030  
4128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